

조문 별 제·개정 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 : 중앙119구조본부 국민 안전체험 운영규정

◇ 제 · 개정 이유

행정규칙 존속기한 도래 및 존속 필요성 검토 결과에 따라 일부 개정함

◇ 주요내용

존속기한 재검토에 따라 종전의 유효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
변경함(안 제15조)